##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권칠승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972 발의연월일: 2022. 6. 15.

발 의 자:권칠승·이원택·김승남

김철민 · 이용우 · 박광온

도종환 · 김태년 · 김회재

김의겸 · 김정호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과 판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관한 필요한 조치 들을 취할 수 있음.

그런데 이 법을 적용받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을 작성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, 같은 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일부규정은 이행기관 범위를 '국가기관', '지방자치단체'로만 규정하여법원, 헌법재판소 등의 국가기관 대상 적용 여부와 시·도 교육청의지방자치단체 적용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.

이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「국가재정법」 제6조의 중앙관서 와 독립기관,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에 따른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 시·도·특별자치시도·군·구로 각각 명시하며,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·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별도의 기관인 교육청을 공공기관에 추가로 명시하여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(안 제2조제2호). 법률 제 호

###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국가기관(「국가재정법」 제6조의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)

나. 지방자치단체(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에 따른 특별시·광역시· 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)

사. 교육청(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특별시· 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교육청)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"공공기관"이란 다음 각 목	2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	
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.	
<u>가. 국가기관</u>	<u>가. 국가기관(「국가재정법」</u>
	제6조의 독립기관 및 중앙
	<u>관서)</u>
나. 지방자치단체	나. 지방자치단체(「지방자치
	법」 제2조에 따른 특별시
	<u>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</u>
	<u>•특별자치도•시•군•</u>
	<u>구)</u>
다. ~ 바. (생 략)	다. ~ 바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<u>사. 교육청(「지방교육자치에</u>
	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
	<u>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</u>
	시・도・특별자치도 교육
	<u>청)</u>
3. ~ 6. (생 략)	3. ~ 6. (현행과 같음)